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9
----------	-----

2023. 3. 24.(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가 기후체계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항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생략)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

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 17.(생략)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는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도정 등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안 제12조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안 제13조는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3. 8. ~ '23.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2년 12월 충남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 제정하였고, 현재 다수의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노동전환 지원,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사

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바,

-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부처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개별 법령의 제정·개정, 지침과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의 계획과 연계 관련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등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사회·교육·문화·노동·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 계층, 성별,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등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지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 및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산업·노동·계층·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소관하는 실·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추천하는 사람
 - 나.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
2.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주민참여 보장
4.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9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전환특구 지역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④ 전환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시·군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 12. (생략)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 17.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 ⑨ (생략)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 : 2022. 1. 1.]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위함

2. 비용발생 요인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운영
- 탄소중립 이행과정 중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피해지원 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기본계획의 수립 등(조례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안 제6조~제8조)
- 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조례안 제10조)
-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11조)
- 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조례안 제12조)
-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조례안 제13조)
- 기금의 설치 등(조례안 제14조)

4.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반요인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결과 : 122,500천원(도비 100%)
 - 기본계획의 수립 : 용역 100,000천원 × 1식 : 100,000천원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2,5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25명 × 1회) × 1개년(23년) = 2,500천원
 - (100천원 × 25명 × 2회) × 4개년(24~27년) = 20,000천원
 - 기타 지원사업* : 추계 불가

※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필요사업 선정 후 추진예정

○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500	105,000	5,000	5,000	5,000	122,500
기본계획 수립	0	100,000	0	0	0	100,000
위원회 구성, 운영	2,500	5,000	5,000	5,000	5,000	22,500
세 출	2,500	105,000	5,000	5,000	5,000	122,500
기본계획 수립	0	100,000	0	0	0	100,000
위원회 구성, 운영	2,500	5,000	5,000	5,000	5,000	22,500
재원 조달	2,500	105,000	5,000	5,000	5,000	122,500
보조금 (국비, 기금)	-	-	-	-	-	-
도 비	2,500	105,000	5,000	5,000	5,000	122,500
시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